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0가단52513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조인명

피고B

변론 종결 2022. 7. 6.

판결 선고 2022. 8. 2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9. 5. 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0,770,6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770,6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9. 5. 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주문 제1, 2항과 같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사해행위 전부 취소 및 원물반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사해행위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하나,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은 예비적 청구취지가 주위적 청구취지의 수량적 일부 청구로 주위적 청구취지에 포함되고,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도 원상회복청구의 공격방어방법 중 하나이므로 판단 순서를 정한 주위적, 예비적 공격방어방법으로 보고 판단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1998. 5. 25. 원고와 보험가입금액을 3,300,000원으로, 피보험자를 D조합로 하는 'E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보험자의 보증보험금 지급청구에 따라 1999. 4. 9.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2,273,583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9233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10. 'C는 원고에게 2,450,170원 및 그 중 2,273,583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2011. 1. 1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3)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 원리금은 2020. 9. 24. 현재 10,770,684원이다.

나. C와 피고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C, G 및 H가 있었는데, 피고와 C, G 및 H는 2019. 5. 8.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하였고, 2019. 11.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관련소송의 진행경과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17546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의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2020. 7. 10.까지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피고는 2020. 7. 8. 소외 회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C의 재산상태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약 1,000만 원의 원리금 채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1,517,000원의 대출금 채무, 소외 회사에 대한 약 5,000만 원의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 7. 27.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소송의 결과에 따라 5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가액반환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K동주민센터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인 2019. 5. 8.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은 357,930,590원이고, 당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최대 3,300만 원이며(M조합대야지점은 시점의 특정 없이 2,500만 원을 피담보채권액으로 기재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보내왔다), 이 사건 사해행위일 당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으로서 N(임차기간 2018. 7.13. ~ 2020. 7. 12. 임대차보증금 2,100만 원)과 ○(임차기간 2018. 6. 30. ~ 2020. 6.29.,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이 있고, 그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 4,6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C의 책임재산은 69,732,647원[= 278,930,590원 = (부동산 가액 357,930,590원 - 피담보채권액 33,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46,000,000원) × 1/4(채무자 상속지분비율)]이고, 선행소송에서 I가 가액배상 명목으로 받은 돈은 500만 원에 불과하여 여전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는 64,732,647원(= 69,732,647원 - 5,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행소송에 따른 가액배상의 완료를 이유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한편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은,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배상이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당시 I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144,000,000원)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구하였고 확정판결이 아닌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조정결과에 따라 가액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선행소송과는(을 제1 내지

3호증 참조)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드러난 C의 재산상태, C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바,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소송에서 원물반환 대신 일부 가액배상으로 볼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2) 나아가 피고가 반환해야 할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와 가까운 2020. 5.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367,014,640원이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2,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에 따른 공동담보가액은 85,503,660원[= (367,014,640원 ~ 25,000,000원) × 1/4]이다.

3) 그런데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20. 9. 24.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이 10,770,68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가 구하는 위 채권액 10,770,6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0,770,68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재은

별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위 임차인은 고려하지 아니 한다.